

## 결 정

2018-2-2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 주 문

이데일리 2018년 1월 26일자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뭘길래?」, 스포츠동아 1월 29일자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뭘길래?」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입니다. 발모가 된다 해서 탈젠 샴푸를 몇 달간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이데일리, 스포츠동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이데일리

이 시각 핫이슈

빛갠지마세요! 정부에서 1억원 특별지급!...

"30억"돈벼락 술집女밤마다 차 안에서..충...

"비만세균" 발견!! 살피는 이유 밝혀져..

저녁대신 이것 먹어 60kg→49kg감량충격!

40대男,퇴직후 3개월만에 7천벌어..이것?

탈모,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뭘길래?

791회 로또1등" 이 숫자 꼭 마킹해야!..화제!

<1. 26. 16:53 캡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60086619081656&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60086619081656&mediaCodeNo=257&OutLnkChk=Y)>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뭘길래?

<http://ad.ladp.co.kr/campaign/?no=IG4x8l2e39J4&acode=qD7vHkdrFO&score=m5OTLcW0yV>

## 2)스포츠동아

실시간정보 | JOY&INFO

- 1 이사갈때, "바가지" 이렇게 피해라! 충격!!
- 2 ▶대명리조트2018년 "신규회원"특별혜택!
- 3 여성무원 매일밤 문자받고, 통장에 40억찍혀..
- 4 밥대신 "생두"한잔! "운동없이" 살미짹짹~ 빠져!!
- 5 ▶대명리조트 "신규회원" 특별혜택 찬스!!
- 6 PD수첩 "당뇨, 고혈압" 약만 먹었다간..
- 7 저녁 안먹고 이것먹어 60kg->49kg감량 성공!!
- 8 탈모, 2주만에 98%발모성공! "이것"뭘길래?

<1. 29. 16:32 캡처>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29/88408092/1>>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뭘길래?

<http://ad.ladp.co.kr/campaign/?no=IG4x8l2e39J4&acode=qD7vHkdrFO&score=m5OTLcW0yV>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식약처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탈젠 샴푸’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또는 발모 기능’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뭘길래?」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탈모 치료’나 ‘발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